

수원고등법원 2022. 12. 23 선고 2022나1519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하나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4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3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가합25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34,476,1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4,476,19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‘H’ 상호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.

나. 원고는 I와 공동으로 용인시 수지구 J, C 양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(아래에서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. 10. 18. K, G과 사이에, 원고와 I가 K, G에게 이 사건 건물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한(인허가, 설계, 공사, 금융조달, 분양, 준공 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)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.

다. 원고와 I는 2018. 2. 28. L 주식회사(아래에서 ‘L’이라고 한다)와 사이에,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일 2018년 3월, 공사대금 4,84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 원고는 2019. 10. 20. L과 사이에, 위 공사대금을 5,280,000,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K은 2019. 6. 1.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,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9. 6. 1.부터 2019. 7. 31.까지, 공사대금을 418,000,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(아래에서 ‘이 사건 도급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마. 원고를 대리한 G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아래 표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인부들 노임 명목으로 E,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54,576,190원을 송금하였고, 아래 표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2,900,000원을 송금하였다. 원고는 아래 표 8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95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번호	송금인	송금 상대방	송금 일시	송금 금액
1	G	E	2018. 12. 24.	25,729,240원
2	G	M	2018. 12. 24.	2,550,000원
3	G	E	2019. 1. 30.	23,961,670원
4	G	M	2019. 1. 30.	2,335,280원
1 ~ 4 합계				54,576,190원
5	G	피고	2019. 2. 27.	171,200,000원
6	G	피고	2019. 3. 22.	181,900,000원
7	G	피고	2019. 5. 3.	149,800,000원
5 ~ 7 합계				502,900,000원
8	원고	피고	2019. 6. 11.	95,000,000원
총 합계				652,476,190원

바. L은 2019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9. 11. 1.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, 원고는 2019. 11. 25. L로부터 공사대금 완납확인서를 교부받았다. 사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2631호로, 피고가 K으로부터 교부받은 ‘각서인 원고, 보증인 K’으로 기재되고 ‘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5,000,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직불하고, 나머지 39,000,000원은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.’는 내용이 기재된 2019. 12. 17.자 ‘공사금 지불각서’에 기하여 39,000,000원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. 1. 19.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.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022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. 5. 3. ‘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’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 : 갑 제1 내지 4, 7 내지 11,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가 2019. 6. 1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418,000,000원에 도급 하였고,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52,476,1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차액인 234,476,190원(= 652,476,190원 - 418,000,000원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민법 제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.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(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)과 구별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,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, 위 각 증거들에 갑 제5,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L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를 대리한 G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인부들 노임 명목으로 E,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54,576,190원,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2,900,000원 등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9. 6. 1.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는 관련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022호 사건에서

‘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L이 N에 하도급한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600,000,000원에 인수하였고,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 이후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18,000,000원에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은 합계 1,018,000,000원이다.’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, 위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 G이 2019. 6. 1. 이전에 피고 등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L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수급인인 N로부터 그 공사 부분을 인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, ③ 피고가 L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및 착공연월일 2019. 1. 6., 준공(예정)연월일 2019. 5. 30., 총 계약금액 506,100,000원, 당년도기성액 502,900,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(갑 제10호증 참조), ④ 원고가 G을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234,476,190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. 9. 10. G에 대하여 ‘불송치(혐의없음)’ 결정을 하였고(갑 제5호증 참조),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K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,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21. 5. 22. 혐의없음(증거 불충분) 결정을 한 점, 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이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34,476,190원을 초과 지급받아 그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무신, 판사 심연수, 판사 유현중